

2004. 11. 20.(토)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가. 제안사유

- 주40시간 근무제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개정시 개정을 보류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 신설
 - 제13조 근무시간을 17:00에서 18:00로 조정
 - 제18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2일 축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분권지원 과-1109(2004.5.9)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충무과-4989(2004.5.24)로 접수되어 제102회 임시회의시 일부 조항(토요휴무제 제외,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확대)은 표준안대로 개정하고 기타 나머지 조

항은 심도있는 검토와 타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을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비밀업수 조항은 표준안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음으로 당연히 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업수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업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의한 선서문에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업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나친 위축을 받을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 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타 자치단체와 균형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동절기(11~2월)에 근무시간 연장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총 근로시간만 맞추기 위하여 비 효율성은 없는지? 등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능률성과 국민정서등을 감안하여 시행해가면서 재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 제18조(연가일수)의 연가수조정은 토요휴무확대에 따라 동절기 퇴근시간연장, 토요전일근무제폐지등과 함께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준칙안과 같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함으로 균형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조항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동수 위원)
- 비밀엄수조항이 되어 있고 복무규정 선서에 양심선언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는가? (김진학 위원)
- 농촌지역은 5시가 되면 어두운데 5~6시까지의 전력 소비량 등 인적자원에 대한 소비성에 대한 것을 생산화 할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김진학 위원)
-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접수된 것이 있는지? (윤성열 의원)
- 공무원들로부터 청취된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윤성열 의원)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없음.
- 소모적인 시간이지만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수 없음.
- 공무원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음.
-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